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 보 공 개 서

[(주)교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교원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116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05.1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3.13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2)397-9220 FAX : 02)397-9139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397-9220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1(을지로2가)

목 차

I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 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교원	빨간펜 수학의 달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1(을지로2가)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09.01	2020.09.01	이진성	02)397-9220	02)397-9139
	법인등록번호	110111-7608362	사업자등록번호	496-86-0200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이진성/ (주)교원	빨간펜 수학의 달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1(을지로2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진성	02)397-9220	02)397-9139
사내이사	장동하/ (주)교원	빨간펜 수학의 달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1(을지로2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진성	02)397-9220	02)397-9139
사내이사	장평순/ (주)교원	빨간펜 수학의 달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1(을지로2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진성	02)397-9220	02)397-9139
사내이사	장선하/ (주)교원	빨간펜 수학의 달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1(을지로2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진성	02)397-9220	02)397-9139
감사	김숙영/ (주)교원	빨간펜 수학의 달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1(을지로2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진성	02)397-9220	02)397-913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계열회사	(주)교원위즈	위즈아일랜드 외 3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51-1, 4,5층(관철동, 교원투어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조안, 윤성훈	02)2125-0770	-
			법인등록번호	131111-0106516	사업자등록번호 129-81-6755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주)프랜시스파커코리아	프랜시스파커컬리지잇	2019.11.01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8, 3층(대연동, 영보빌딩)	정조앤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주)교원위즈	빨간펜수학의달인	2022.06.3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1, 15층 일부	장동하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빨간펜 수학의 달인	-
상 호	빨간펜 수학의 달인 00점	-
상표 (서비스표)	 수학의 달인	등록번호: 45-0046423-0000
상표 (서비스표)	빨간펜 수학의 달인	등록번호: 45-0037635-0000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682,457,934	494,469,203	187,988,730	359,660,509	20,621,742	107,490,284
2022	662,823,570	491,114,327	171,709,242	398,033,207	-11,507,138	-9,180,478
2023	558,846,139	433,357,802	125,488,336	318,307,850	-50,727,049	-41,318,784
[별지4참조]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2021년 동안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없으며, 2022~2023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상기 1)의 매출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 업 경 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진성	대표이사	2023.09~현재	(주)교원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장동하	사내이사	2020.09~현재	(주)교원 사내이사	경영관리
가맹사업 관련임원	장평순	사내이사	2021.08~현재	(주)교원 사내이사	재무관리
가맹사업 관련임원	장선하	사내이사	2021.10~현재	(주)교원 사내이사	점포개발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숙영	감사	2020.09~현재	(주)교원 감사	운영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5	-	1,21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교원	가맹사업 경영	2022.06.~현재	빨간펜 수학의 달인(등록번호: 20211164)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교원위즈	가맹사업 경영	2021.05~2022.06	빨간펜 수학의 달인(등록번호: 20211164)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교원위즈	가맹사업 경영	2019.01.~2020.04	빨간펜 수학의 달인(자진취소)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교원위즈	가맹사업 경영	2017.02.~현재	위즈아일랜드(등록번호:20080200147)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교원위즈	가맹사업 경영	2015.06~현재	프랜시스 파커 컬리지잇(등록번호: 20150458)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교원위즈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시작 예정	와이어트 인스티튜트(등록번호: 20230946)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교원위즈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시작 예정	플래너스어학원(등록번호: 20240296)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빨간펜 수학의 달인 (상표권)	 수학의 달인	2013.10.02.	45-0046423-0000	(주)교원	2023.10.02.
빨간펜 수학의 달인 (상표권)	빨간펜 수학의 달인	2011.12.26.	45-0037635-0000	(주)교원	2031.12.26.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빨간펜 수학의 달인] 가맹사업 현황

1. [빨간펜 수학의 달인]의 가맹사업 시작한 날 : 2011년 06월 01일

2. [빨간펜 수학의 달인]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교원	빨간펜 수학의 달인	이정자	2011.6.1. ~ 2012.3.23	서울시 중구 을지로 51 (을지로2가)
(주)교원	빨간펜 수학의 달인	장평순	2012.3.24. ~ 2018.12.12	서울시 중구 을지로 51 (을지로2가)
(주)교원위즈	빨간펜 수학의 달인	장동하	2019.1.1. ~ 2022.6.2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1, 15층 일부
(주)교원	빨간펜 수학의 달인	복익순, 신영욱	2022.6.30. ~ 2022.10.3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1(을지로2가)
(주)교원	빨간펜 수학의 달인	신영욱	2022.11.1. ~ 2024.01.3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1(을지로2가)
(주)교원	빨간펜 수학의 달인	이진성	2023.09.01 ~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1(을지로2가)

3. [빨간펜 수학의 달인] 업종

영업표지	업 종	
빨간펜 수학의 달인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교육(교과)	교재 및 학습 시스템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빨간펜 수학의 달인] 가맹점 및 직영점 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09	809	-	812	812	-	812	812	-
서울	98	98	-	94	94	-	82	82	-
부산	28	28	-	28	28	-	31	31	-
대구	36	36	-	38	38	-	34	34	-
인천	43	43	-	48	48	-	55	55	-
광주	20	20	-	13	13	-	11	11	-
대전	30	30	-	28	28	-	29	29	-
울산	28	28	-	29	29	-	26	26	-
세종	8	8	-	9	9	-	11	11	-
경기	243	243	-	252	252	-	254	254	-
강원	29	29	-	30	30	-	25	25	-
충북	22	22	-	25	25	-	26	26	-
충남	38	38	-	44	44	-	54	54	-

전북	9	9	-	8	8	-	7	7	-
전남	25	25	-	25	25	-	22	22	-
경북	52	52	-	49	49	-	53	53	-
경남	92	92	-	83	83	-	81	81	-
제주	8	8	-	9	9	-	11	11	-

5. 최근 3년간 [빨간펜 수학의 달인]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908	52	-	151	24	809
2022	809	83	-	80	3	812
2023	812	119	-	119	-	812

6. [빨간펜 수학의 달인]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빨간펜 수학의 달인]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6개월 이상 운영 산출대상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812	25,762	1,521	186,300	28,552	150	6	661
서울	82	27,290	1,650	137,400	13,866	300	15	68
부산	31	26,320	1,729	105,600	10,657	1,650	84	28
대구	34	20,862	1,681	105,750	7,781	2,400	193	25
인천	55	24,247	1,506	111,000	7,245	450	12	45
광주	11	21,851	1,058	76,650	3,011	2,100	210	8
대전	29	25,489	1,378	125,400	12,655	300	12	27
울산	26	27,467	1,169	137,700	5,410	150	6	26
세종	11	15,279	955	36,900	1,500	300	15	7
경기	254	26,737	1,574	134,400	28,552	150	15	206
강원	25	29,100	1,806	98,400	9,840	300	30	21
충북	26	28,357	1,495	74,400	7,508	7,350	477	23

충남	54	29,684	1,480	186,300	7,815	750	60	38
전북	7	32,820	2,198	56,400	4,305	14,100	700	5
전남	22	20,420	1,304	72,750	5,025	1,800	91	15
경북	53	26,015	1,538	85,200	13,802	450	35	44
경남	81	20,393	1,344	106,950	8,220	150	15	68
제주	11	34,071	2,371	140,100	14,010	1,650	83	7

- 가맹점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치 산술식: 가맹점 월 평균 월생 수(온라인 학습 시스템 등록 회원 수) X 15만원(3월 기준 수강료)
- 위 금액은 총 812곳 가맹점 중 미운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가맹점(6개월 미만 포함) 151곳 가맹점을 제외한 661곳 가맹점의 매출액을 추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영업일수 6개월 이상 1년 미만 가맹점의 경우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평균 매출액은 미운영으로 매출이 0인 곳 제외
- 당사는 개별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위 추정치 산술식에 따른 산출 금액은 귀하의 실제 매출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매출액은 시장상황 등 외부요인,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빨간펜 수학의 달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빨간펜 수학의 달인]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812곳	약 6년 1개월(2,216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21개)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김해, 창원, 고성, 함안, 의령, 창녕, 밀양, 합천	경남지사	(5136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 12길 113 경민인터빌 상가 306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류창열	010-3571-5777	4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1.04.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부산광역시 및 경남 양산	부산양산지사	(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6 (초량동) 17층 수학의 달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이호경	010-2694-0867		39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1.04.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세종, 충북	세종충북지사	(30063)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49 (고운동 1731) 가락마을2단지 209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정규동	010-2625-6018		3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8.09.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평택, 오산, 안성	평택남경기지사	(17848) 경기도 평택시 서재1길 47-62 2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강순복	010-3237-4556		2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08.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구미, 김천, 상주, 문 경, 안동, 영주, 칠곡, 예천, 의성, 왜관	경북지사	(39215)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316 태성빌 딩 2층 2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박진호	010-2526-0784		2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8.07.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광명시 및 부천시, 인 천 서구, 인천 계양구	경인지사	(14689)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 46 스카이웰수 학학원 2층 2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김나경	010-9983-4571		5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4.03.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경기 수원, 화성	수원화성지사	(1670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9 (영통동) 럭셔리프라자 406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이영록	010-3722-9025		49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1.03..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광주광역시 및 전남	광주전남지사	(61746)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36 도원빌		

전 지역		딩 4층 4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곽소영	010-3618-4008		3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1.04.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경기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양양, 홍천	북경기강원북부지사	(12248)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9번길 25-23 (다산동 6144-1) 다산진건블루웨이일지식 산업센터2차 5층 F503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이호섭	010-9547-7979		3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4.03.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울산광역시 및 경북 경주, 포항	울산포항경주지사	(44695)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65 (달동, 변영로 코아루 더 클래식) 코아루 205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박경은	010-5775-6567		4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4.03.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대구, 경산, 영덕, 울진, 청송	대구경산지사	(41943)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09 (덕산동) 교원빌딩 2층 빨간펜수학의달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공진근	010-3744-4333		4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1.04.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경기도 고양, 김포, 파주	서경기지사	(1038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06 한솔코아 409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신종훈	010-8791-0508		4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4.03.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부평구, 동구	인천지사	(22003)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30번길 32 송도자이하버뷰2단지아파트 상가 2층 205호 수학의달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이화경	010-8845-3554		3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9.10.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대전 및 전북 전 지역	대전전북지사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 프라자 406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강명구	010-8806-0893	3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4.03.01 ~ 현재	0	0	X
	2019.10.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진주, 거제, 통영, 사 천, 함양, 거창, 남해, 하동, 합천, 산청	서경남지사	(52695)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54 2층 수학의달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최타인	010-4817-8187	2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8.08.01 ~ 현재	0	0	X
	2019.10.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경기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원주, 횡성, 강 릉, 평창,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동해	동경기강원남부지사	(1697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9(구갈동 354-8) 로얄프라자 7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허진욱	010-8997-4198	4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4.03.01 ~ 현재	0	0	X
	2019.10.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서울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구, 동작 구, 관악구, 서초구, 용 산구, 마포구, 서대문 구, 은평구	서서울지사	(07635)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82 (내발산 동) 발산로알타워 201호/ 배송주소(14473) 경 기도 부천시 소사로 706 (원종동) 3층 시너지 학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박찬권	010-2570-4280	4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8.07.01 ~ 현재	0	0	X
	2019.10.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제주 전 지역	제주시사	(633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화로1길 11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양윤영	010-4343-4946	9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8.06.01 ~ 현재	0	0	X
	2019.10.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종로구, 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 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광진구, 강동 구, 강남구, 송파구	동서울지사	(024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21길 97-9(휘경동 267-101) 5층 수학의달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최돈영	010-2420-2734		3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4.03.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경기 광주, 군포, 성남, 안양, 의왕, 하남시	성남안양지사	(1342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 (도촌 동565) 스마트시티빌딩 31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채수열	010-5304-5449		4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8.08.01 ~ 현재	0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충남 전 지역	충남지사	(31471)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요진 와이시티 203동 426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박진아	010-5739-5105		5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4.03.01 ~ 현재	0	0	X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빨간펜 수학의 달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광고비 및 판촉비는 이보다 훨씬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선전비	(비공개)	연중	10,043,231	10,043,231	-	손익계산서 기준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 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 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명동영업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1	1588-999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국민은행**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시어 작성한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시거나,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에 접속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자세한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전화(1588-9999)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빨간펜 수학의 달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 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 치	확정 금액
설비, 오픈행사 등 기타 비용	가맹본부	예 치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 계	1,500	-	-	-	(예외조건)
가입비	1,0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영업 개시 이전 계약 해지	가맹 계약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교육비	5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교육 시작 1일전에 계약 해지	교육에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는 코로나19 상황에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될 수 있음(이 경우 교육비는 감소 예정)

(2)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계약이행 보증금	1,0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가맹금 미지급, 물품 대금 미지급 등	가맹계약 해지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합 계	2,500
가 맹 비	1,000
교 육 비	500
계약이행보증금	1,000 (부가세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총계		12,500~ 18,800				홀매장 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지정업체 (미정)	3,300~ 6,600	330~66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즉시	공사 전 계약 취소	33㎡~66㎡(10 ~20평)기준 (3.3㎡ 당 4,400)
간판		1,200	60~120	물품 공급 1일 이전	공사 전 계약취소	33㎡~66㎡ 기준
필수설비		6,000~ 9,000	450~900	계약일	협력업체 주문 전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500	-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
썬팅	지정업체 (미정)	1,500	75~150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시공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비용: 철거, 전기증설, 소방, 냉난방, 음향 외부테라스, 각종 가구류, 간판등 견적 외 품목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 정 기 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가맹희망자가 최종 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 점포선정 문의처 : 당사 가맹사업팀(02)397-9220)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항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준하는자 - 관할 교육청 규정 준수
교사	특별한 기준 없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항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준하는자 - 관할 교육청 규정 준수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가맹점 등 분납 제도

당사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상표사용료	없음	-	-	-	-	-
광고 부담금	광고에 따라 다름	-	-	-	-	39페이지 참조
판촉물	가맹본부	-	신청 익월 5일까지 지급	불량 등 반품	개봉 또는 사용시 (사용가치의 상실)	가맹점주 신청 품목에 따라 금액 산정
교재	가맹본부	단가30,000	신청 익월 5일까지 지급	파본 등 반품	개봉 또는 사용시 (사용가치의 상실)	정규교재 및 과월호 등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1인당 200,000	교육실시 전	교육미실시	교육 참석 후	보수 교육
점포환경 개선 비용	해당 인테리어 업체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80% 또는 60%]	-	-	-	35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당 사	연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	-	가맹계약 제 44조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바로 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

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

-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빨간펜 수학의 달인]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기타 실행 경비는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가맹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 가맹점사업자와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설비 및 당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POS시스템 등의 사용도 중단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해지일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철거하여야 하며, 운영매뉴얼 등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 만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사를 표시하는 시설물 철거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소요된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 ☞ 계약종료 이후에는 당사에 지급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지급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을 수령 후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이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에게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 개점 전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별첨1]**의 대금 지급방법(예치 포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개점 전 해약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17조 참조]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귀하가 [빨간펜 수학의 달인]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빨간펜 수학의 달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목록은 상담 시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가 당사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동종업계 및 경쟁업체	당사가 공급하는 교재 및 학습 시스템	당사가 제공하는 교재와 시스템 판매 불가	1. 가맹계약 제31조1항에 따라 3일 전에 서면 또는 온라인시스템(class.dal-gong.com)을 통해 통지한 후 상품 공급 및 영업 지원 중단 2. 가맹계약 제37조1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을 시 가맹계약 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계약 제39조1항에 따라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액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목록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지3[판매상품리스트]참조	#별지3[판매상품리스트]참조	홈페이지에 공지	

귀하가 당사의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가맹사업	빨간펜 수학의 달인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세대수 500세대 당 1점포	가맹계약서에 표시

- ①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의 하자,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임을 확약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는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 [해당 구]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가집니다.
- ④ 가맹본부는 전항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따르는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을”과 **합의하여 영업지역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합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합의 여부 회신 -합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사는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빨간펜 수칙의 달인] 영업표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빨간펜 수학의 달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2023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100	0	0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빨간펜 수학의 달인]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계약 다음 해 연말까지]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8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빨간펜 수학의 달인]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에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절차

일반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 경매 신청 된 경우	제28조 제1항 제1호

○ 가맹점본사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점본사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점본사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2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3조 제1항(가맹점의 표시)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3호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제28조 제1항 제4호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본사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5호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6호
○ 가맹점사업자가 경업을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을 통하여 가맹점본사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7호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 로열티, 광고, 판촉비 등의 대금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을”의 채무가 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제28조 제1항 제8호
○ 가맹점사업자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9호
○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0호
○ 가맹점사업자가 노후 된 점포설비의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따른 교체·보수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1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제1항의 규정(감독 및 시정요구권)에 의한 가맹점본사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2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을 변경·추가하거나 가맹점본사에 의해 변경된 상품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3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자점매입)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의 정한 매뉴얼 기준에 따른 합리적 관리 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거나 당사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5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제28조 제1항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6호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점본사의 가맹점 전체에 대한 이미지 손상행위를 지속할 경우	제28조 제1항 제17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와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8호
○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점본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제28조 제1항 제19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 또는 가맹점본사가 지정하는 공급자로부터 정보공개서 등 문서에 정해진 초도물품 등 기타 설비의 공급 주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18조 제4항 제1호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에 적정 매장근무자가 채용되지 않아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제18조 제4항 제2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 또는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금전의 입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제4항 제3호
○ 그 밖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개점이 연기 되는 경우	제18조 제4항 제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8조 제4항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35조 제3항 제2호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제35조 제3항 제3호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35조 제3항 제4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 제3항 제5호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제35조 제3항 제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3) 즉시해지 사유 및 절차

위의 일반해지와 달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가맹계약서 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교육업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44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당사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02)397-9220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양

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와 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당사의 가맹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비는 없으나 필수교육 발생 시는 실비
대리행사	당사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업무위탁	당사 승인시 가능	-	-	-

☞ 가맹점운영권 관련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관련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영업 중에는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빨간펜 수학의 달인]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빨간펜 수학의 달인과 동일한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02)397-922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빨간펜 수학의 달인]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22:00	일요일, 공휴일 제외	문의: 가맹사업팀 (02)397-92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특별한 제한 없음	직접 근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관할 교육청 규정 준수

(4) 당사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필요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빨간펜 수학의 달인]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지역광고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당사부담	가맹점부담		
광 고	상품광고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광고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전국 행사)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 음	-	-
	가맹점 개별광고	없 음	100%		
개별 행사	기타 지역광고의 경우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임의 시행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의 판촉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
판촉 행사	공동판촉 활동	협의	협의 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팸플릿, 전단, 카달로그 등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전국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은 당사는 물론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

는 공동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은 가맹점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환기를 위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불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하기 20일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서 상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당사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사항	손해배상액	계약서 조항
------	-------	--------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3만원x계약잔여일수	39조 1항
계약 종료 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3만원x무단사용일수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이후 아래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계약서 조항
비밀유지 의무	제24조
경업금지 의무	제25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 사항	제38조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	50일 내외	[12p~16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4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당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당사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당사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사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당사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당사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당사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당사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당사 부담	문의 : 가맹 사업팀 02)397- 9220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당사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당사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빨간펜 수학의 달인]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빨간펜 수학의 달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은 당사가 정한 곳에서 개업 전에 소집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빨간펜 수학의 달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 용	비 고
신규 교육	1박 2일	500	운영 전반,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활용방안, 마케팅, CS 등
양수 교육	상동	상동	상동
보수 교육	필요 시간	200	목표관리, 운영관리, 수학교수법, 비즈니스 마인드, CS, 마케팅등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VAT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 지

- | | |
|--------------------------|--------|
| 1. 교재리스트 | 별지-1 |
| 2. 재무상황 | 별지-2 |
| 3. 가맹점 순회 점검표 | 별지-3 |
| 4.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 별지-4 |
| 5.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 별지-5-1 |
| 6.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 별지-5-2 |

[별지 1] 교재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상기의 상품 중 당사의 전용상품과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은 강제함
- ※ 상기의 공급상품은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상기의 리스트와 거래상대방은 점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별지2] 재무제표(2020~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 순회 점검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구 분	점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빨간펜 수학의 달인]**의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가맹희망자**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수령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수령장소 :

*** 가맹본부 :** (주)교원 (인)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빨간펜 수학의 달인]**의 정보공개서를 제공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가맹본부 : (주)교원 (인)

제공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제공장소 :

* 가맹희망자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